

어장이용개발계획서

(단위: 건, ha)

① 총 개발 적지(適地) 면적	이미 개발한 어장			⑤ 총 미개발 면적	⑥()년 ()개발계획						신청수면의 개발상 제약 사항					⑰ 개발 하려는 사유	
					⑦ 어업별			⑧ 수면의 위치	⑨ 수면의 번호	⑩ 건수	⑪ 면적	⑫ 국가 공익 관련	⑬ 자원 보호 관련	⑭ 어업 조정 관련	⑮ 수산 법규 관련		⑯ 그 밖의 사항
	② 어업의 종류	③ 건수	④ 면적		종류	어업의 방법	품종										

작성방법

1. ①란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개발하려는 수면의 총 적지(適地)면적을 적습니다.
2.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이미 개발한 어장에서 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(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)와 건수 및 면적을 적습니다.
3. ⑤란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아직 개발하지 않은 어장(수면)의 총 면적을 적습니다.
4. ⑥란의 앞 ()에는 개발연도를 적고, 뒤 ()에는 정기 또는 변경 중에서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유형을 적습니다.
5. ⑦란 중 어업의 방법에는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방법을 적고, 마을어업의 경우에는 포획·채취수단을 적습니다.
6. ⑧란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의 위치를 적습니다.
7. ⑨란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의 번호를 차례대로 부여하여 적습니다.
8. ⑩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, ⑪란에는 개발건수에 대한 면적을 적습니다.
9. ⑫란에는 「수산업법」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 후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10. ⑬란에는 보호수면, 수산자원보전지구, 회귀성어류 보호수면 등 수산자원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.
11. ⑭란에는 보호구역 중복, 어장 과밀, 어도 차단, 어장구역 중복, 인근 어장과와의 분쟁 예상 등 어업 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.
12. ⑮란에는 어장기점설치 가능 여부, 육지와와의 거리, 수심, 인근 어장과와의 거리, 그 밖의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정책 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.
13. ⑯란에는 그 밖에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사항을 적습니다.
14. ⑰란에는 신청수면을 어장으로 개발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15. ⑯란부터 ⑰란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"없음"이라 적습니다.